

| | |
|--|----|
| 제 2241 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책과채택및불합일과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 30 |
| 제 2242 호 :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급에대한시책과채택및불합한조례중개정조례 | 30 |
| 제 2243 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책과채택및불합한조례중개정조례 | 21 |
| 제 2244 호 :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책과채택및불합한조례중개정조례 | 21 |
| 제 2245 호 :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예따른특별채택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 21 |
| 제 2246 호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임대한시책과채택및불합한조례중개정조례 | 22 |
| 제 2247 호 :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책취급하는부동산에대한취급특별채택및 불합한조례중개정조례 | 22 |
| 제 2248 호 :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특별채택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 | 23 |
| 제 2249 호 :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의배업자의택시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책과채 택및불합일과채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24 |

㉞ 규 칙

| | |
|---|----|
| 제 2204 호 : 서울특별시전인차량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24 |
| 제 2205 호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29 |
| 제 2206 호 : 서울특별시공연장행정처분기준규칙중개정규칙 | 30 |
| 제 2207 호 :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화원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 34 |
| 제 2208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35 |
| 제 2209 호 : 서울특별시약국및의약품등판매업소에대한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 칙중개정규칙 | 36 |
| 제 2210 호 : 서울특별시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 43 |

㉞ 훈 령

| | |
|---------------------------------------|----|
| 제 650 호 : 서울특별시신설구업무처리에관한장정규정제정 | 43 |
| 제 651 호 : 서울특별시가정의폐식장려가치리규정 | 44 |

㉞ 고 시

| | |
|-----------------------------------|----|
| 제 955 호 : 1988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 | 49 |
| 제 96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제외변경승인 | 50 |

◎ 공 고

제 811 호 : 판인신조 51

제 813 호 : 제 2 종진거공사업면허취소 54

◎ 구 공 고

상복규제 289 호 : 직인계각 54

약천규제 1 호 : 판인신조 55

◎ 사 령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요지 및 장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12. 31

서울특별시장 김 용 재

조 례

○서울특별시시조례제 2233 호

서울특별시시요지및장재장사용료징수
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요지 및 장재장사용료징
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공설요지, 공설화장장의 관
리 및 사용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
라 한다)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및 공설화장장(이하
"화장장"이라 한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설묘지"라 함은 본묘의
형태를 개선하고 조경, 미화하기
위하여 일정구역울 구획한 묘지
를 말한다.
2. "일반묘지"라 함은 공설묘지

중 공원묘지를 제외한 묘지를
말한다.

3. "적출물"이라 함은 신뢰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 물체를 말한다.

제 3 조 (명칭 및 위치) ①묘지의 명
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화장장은 경기도 고양군 벽계읍
대과리 산 178-1번지에 둔다.

제 4 조 (사용료) 묘지 또는 화장
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사용면적) ①일반묘지의 사
용면적은 1기당 5.6제곱미터 이상
15.8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합
장의 경우는 25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공설묘지의 사용면적은 1기당
8.25 제곱미터로 한다.

제 6 조 (사용료등) ①묘지 및 화장장
의 사용료와 묘지관리비(이하 "사
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용료감면) 시장은 생활보
호법 제 3 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장면할 수 있다.

제 8 조 (사용권의 소멸등) ① 묘지의 사용허가물 받은자가 1월 이내에 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권은 소멸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사용권의 반환) 묘지의 사용허가물 받은자가 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함으로써 사용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 11 조 (사용자 신고) 묘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때

제 12 조 (묘지의 사용방법등) ① 시장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있어서 차례로 묘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묘지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 조 (분묘의 구조)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 14 조 (묘비등의 설치) 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묘비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사용권의 취소) 묘지의 사용허가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물 취소할 수 있다.

-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불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6 조 (수거 및 개장절령) ① 시장은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물 취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예 의한

동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 제 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물 한후 수거 또는 개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5조 제 1호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17조 (원상회복 및 실비반상) 사용자가 묘지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시장은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반상을 명할 수 있다.

제 18조 (납골당유골안치기간 및 처리) ①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인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 19조 (권한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및 화장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장 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및 화장장의 사용자
2.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의 감면
3.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의 신고 수리
4.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형태 변경 승인
5.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봉묘의 구조
6.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취소
7.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개장 명령
8.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및 실비반상 명령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장의 감독을 받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 20조 (사업보조) 시장은 묘지 및 화장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자재 또는 현금을 보조할 수

| | |
|--|---|
| <p>있다.</p> <p>제 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p> <p>(별표 1)</p> | <p>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례장 사용료 징수조치에 의하여 사용하는 묘지 및 화장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p> |
| <p>서울특별시공설묘지</p> | |
| <p>명 칭</p> | <p>소 색 지</p> |
| <p>서울특별시립 망우리묘지</p> | <p>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동 산 51-2, 산 52-3, 산 56, 산 57-1, 산 57-2, 산 57-3, 산 57-4, 산 57-5, 산 57-6, 산 58, 산 59, 101-6, 101-7, 102-1, 102-2, 103-1, 103-2, 104-1, 104-2, 105, 106-1, 106-2, 106-3, 106-4, 160-5, 면목동산 1-1, 경기도 구리시 교문리 산 34-1, 산 34-2, 산 34-3, 산 34-4, 산 34-5, 산 34-6, 산 34-7, 산 37, 산 39-39, 산 39-77, 산 84-1, 산 145, 산 84-2, 산 39-32, 산 39-33, 산 39-35, 산 39-36, 산 39-34, 산 39-37, 산 39-38, 산 39-40, 산 39-41, 산 39-42, 산 39-43, 산 39-44, 산 39-45, 산 39-59, 산 39-60, 산 39-61, 산 39-81, 산 39-82, 산 39-83, 산 39-85, 산 39-86, 산 39-87, 산 60</p> |
| <p>서울특별시립 내곡리묘지</p> | <p>경기도 남양주군 진경면 내곡리 산 99-2 550-3</p> |

| 명 칭 | 소 | 세 | 비 | |
|--------------------------|--|-----|------------------|-------|
| 서울특별시립 용머리묘지 | 경기도 파주군 강탄면 용머리 산 91-1, 산 92-2, 산 93-3, 산 93-5, 산 94, 산 95-1, 산 96, 산 97-1, 산 98, 산 101-7, 산 102-2, 산 105-1, 산 107, 344-1, 346-4, 346-14 | | | |
| 서울특별시립 벽계리묘지 | 경기도 고양군 벽계읍 벽계리 산 4-1, 산 4-4, 산 6-1, 산 6-2, 산 5 | | | |
| 서울특별시립 동원묘지 |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머리 산 65-1, 산 65-8, 산 65-6, 산 65-7, 산 67-1, 75-7, 75-9, 75-12, 18, 19-2, 24-2, 36-5, 37-2, 52-1, 59-2, 83-10, 184-2, 210-4, 223-4, 226-3, 227-3, 226-2, 227-5, 267-4, 16, 17-2, 25-5, 28-2, 29-3, 30-2, 38-3, 209-1, 211-5, 35-4, 42-7, 45-1, 53-2 | | | |
| (별표 2) | | | | |
| <u>사 용 료 및 관 리 수 수 료</u> | | | | |
| (단 위 : 원) | | | | |
| 구 분 | 내 | 용 | 요 | |
| 묘 지 | ○ 사농료 | | | |
| | · 일반묘지 : 3.3 제곱미터당 · 공원묘지 : 반봉분형 1기당 (3.25 제곱미터) | | 4,380 125,000 | |
| 과 장 장 | ○ 관리비 | | | |
| | · 공원묘지 : 반봉분형 1기당 | | 44,200 | |
| 남 | ○ 대인 (만 13 세 이상) | 1구당 | 7,700 | |
| | ○ 소인 (만 12 세 이하) | " | 3,900 | |
| | ○ 사산아 | " | 1,000 | |
| | ○ 유골계장 | " | 2,000 | |
| | ○ 적출물 (10 kg) | 1건당 | 2,700 | |
| 남 | ○ 남 | 2년한 | 1구당 | 2,000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81

◎서울특별시조례 제 2234 호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 제정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진
학 청소년등 불우청소년들의 학교교
육, 직업훈련 또는 생활진차등을 지
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
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청소년대책위원, 회의위원, 독지가
의 성금등 개인 또는 단체의 기
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 3 조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

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
실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서울특별시 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
시 부녀청소년과장이 된다.

제 5 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을 운용하여 지원할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8 조 제 1항의 규정에서 의한
지원대상자의 심사, 선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불우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
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계
술하고, 임시회의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거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
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기금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 외원금(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제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책임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물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 8 조 (기금지급) ①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소년, 소녀가장과 그 세대원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으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1. 학자지원금은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기술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할 수 없거나 졸업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한다.
2. 직업훈련지원금은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또는 자격증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3. 자활지원금은 생활정착등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한도액 및 지급방법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조 (대상자 추천및선발) ①구청장은 제 8 조 제 1 항 각호에 의한 지원금 받 지급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구청·소년단체·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위원회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 10 조 (지급정지및회수등)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의 사용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1 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관공사업에 관한 징수금징수조례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용택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235 호

서울특별시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제정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 19 조 제 3 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징금 납부통지)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 1 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 통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과징금 납부등)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 일로 한다.
②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 4 조 (과징금의 납부연기) 납부의무자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 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 지변, 화재, 도난등의 재해를 당하여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를 입어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 5 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책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 일 이내 (은행날인 경우에는 15 일 이내)에 10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 3 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강제징수)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상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과징금 처분대상) 시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과징금의 부과, 징수여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 시 청 부 세 무 지 도 파 | | | 시 청 부 세 무 지 도 파 | | | 시 청 부 세 무 지 도 파 | | |
|---|-----|------|--|-----|------|--|-----|------|
|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판보편용) | | | 과징금영수원통지서 (서울특별시보편용) | | | 과징금영수증 (납부자보편용) | | |
| 계 호 | 년도 | 일반회계 | 계 호 | 년도 | 일반회계 | 계 호 | 년도 | 일반회계 |
| (과) 세외수입 | (권) | | (과) 세외수입 | (권) | | (과) 세외수입 | (권) | |
| (항) | (목) | | (항) | (목) | | (항) | (목) | |
| <p>일 금</p> <p>원정진흥법시행령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관공사업법에 관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위반정위 :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시공금수납대행점 년 월 일</p> <p>서울특별시청 인</p> <p>남부자 : 주 소 : 성 명 :</p> | | | <p>일 금</p> <p>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p> <p>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인 (세무지도과)</p> <p>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귀하</p> | | | <p>일 금</p> <p>상기 금액을 영수함.</p> <p>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인</p> <p>남부자 주 소 : 성 명 :</p> | | |
| 남 입 자 | | | 남 입 자 | | | 남 부 자 | | |
| 징 수 권 | | | 징 수 권 | | | 주 소 : | | |
| 수 납 금 원 | | | 수 납 금 원 | | | 성 명 : | | |

60-12 제 1390 호
시
1987.12.31

| | |
|---------------------|------|
| <p>과징금납부기한연기신청서</p> | 처리기간 |
| | 7 일 |

| | | |
|---------|---------------|------|
| 납부의무자 | 성 명 (대표 자) | |
| | 주 소 (회 사 명) | |
| 통 지 번 호 | | 납부기한 |
| 납부금액 | | |

1.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필요한 연장기간
3. 기타 참고사항

위와같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서울특별시 관공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과징금독촉장 (수납기관보관용) | | | 과징금영수필통지서(서울특별시보관용) | | |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사보관용) | | |
|---|--------------|--|---------------------------------------|--------------|--|--------------------------------|--------------|--|
|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 |
| 납부자 | 성명 (대표자) | | 납부자 | 성명 (대표자) | | 납부자 | 성명 (대표자) | |
| | 주소 (회사명) | | | 주소 (회사명) | | | 주소 (회사명) | |
| 납부금액 | 과징금 | | 납부금액 | 과징금 | | 납부금액 | 과징금 | |
| | 가산금 | | | 가산금 | | | 가산금 | |
| | 계 | | | 계 | | | 계 | |
| 납부기한 | 19년 월 일 | | 납부기한 | 19년 월 일 | | 납부기한 | 19년 월 일 | |
| 납부장소 | 한국상업은행(본,지점) | | 납부장소 | 한국상업은행(본,지점) | | 납부장소 | 한국상업은행(본,지점) | |
| 위의 금액이 채납되었으나 납부하지가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년 월 일 | | | 귀하같이 납부하였기에 동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 | 귀하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 |
| 서울특별시장 <input type="checkbox"/> 수납인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납인 | | | 수납인 | | |

60-14 제 1390 호 시

일 1987 12 31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용래

◎서울특별시조례 제 2236 호

서울특별시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소매업진흥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4조 및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에 두는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제 3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도·소매업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 (매장면적이 3천제곱
미터이상인 대규모소매점에 한한다)
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3. 법제 16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
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권고 및 그 권고사항의 이행에 필

- 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 49조의 규정과 의한 특
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의 영
업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사항
 5. 기타 서울특별시 도·소매업의
진흥 및 분점적 확산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
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시정연구과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건설
관리국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서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 유통산업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3. 도시계획 민 건축전문가 2인
4. 소비자단체 및 관련업체대표 3인

③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
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
특별시 산업경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청문)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7 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서울특별시 상공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 결정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237 호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제정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 집행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강의 보존,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강보존을 위한 범시민 참여 운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중 1인은 시민참여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1인은 기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제 2 조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2. 하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3. 한강연안구역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모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과수 이상분과위원회, 공원녹지분과위원회, 공예, 환경분과위원회, 자연생태적분과위원회 및 시민참여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의 각 분과위원회의별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장이 사모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의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8 조 (안전배부)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3일전에 미리 위원 및 해당 분과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0 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시민참여분과위원이 임기중 다른 구로 거주를 옮긴 때
3.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1 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의 관리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서기는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서무계장이,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서울특별

시 한강관리사업소의 관련재장이 된다.

제 12 조 (회의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사항중 중요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 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으로서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

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제2238호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38 호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제2238호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39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의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하철도건설추진법 제16조 및"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40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조례제 2241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6년 12월 31이전에 건축주도 부터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이미 매수계약한자가 등거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중첩의 조례에의하여 등록세는 경감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취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조례제 2242 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의 주택취득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의 주택취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조례제 2243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태양열난방주택에 관한 시과세면제에 관
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44 호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시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기의 다른 등
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45 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다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
에 다른 등록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
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령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령본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령제 2246 호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령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령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령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공사업수행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령본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령제 2247 호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과세면제에 관한조령중 개정조령

서울특별시 공공사업수행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령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년 12월 31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령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령본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48 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생활준비에 집안겨우하고 있는 중상 이자와 국가유공자애우등의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공자의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한다.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의우등의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의 상이등급구분표중 2급은 분류번호 14,79,98,102,104,105호,3급은 분류번호 5,22,23,24,27,31,78,

81,83,86,89,503 호 4급은 분류번호 109,112,113,504 호, 5급은 분류번호 26,29,41,77,92,505 호에 해당하는 자 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에 한하며, 이 경우 분류번호 503,504,505 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는 하지계통호수 (분류번호 30,32,37,40,47,49,50,53,54,59,60,65,67,70 호)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4기동 이하로서 1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연도세 및 자동차세를 면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배업자의 여객용 중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249 호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입자의매매
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입자의매매
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2 조와 제 3 조중 “도로운송차량법”
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결인차량운영에관한조례시
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용태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2204 호

서울특별시결인차량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결인차량운영에관한조례 시
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결인차의 승무원은 경찰관(의무
경찰순경)으로 하고, 운전원은 고
용직 공무원으로 제 1 종 또는 제
2 종 운전면허중 특수면허(레이카)
를 소지한 자로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결인차량의 보판) ①차주, 사
업주 또는 운전자(이하 “차주등”
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차
량을 결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차
주등이 원하는 장소까지 결인 이
동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계
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 |
|---|--|
| <p>②경찰관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전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경찰국 전인집중관리소(이하 "전인집중관리소"라 한다) 또는 관할경찰서정에 전인 보관하여야 하고, 차량을 인수받은 경찰관은 당해 차주등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차주등은 전인집중관리소(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26-6 번지 소재)에 출석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전인로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부받은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p> <p>제 4 조 및 제 5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4 조 (전인로납부) ①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주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금액을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수납 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인로를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고지서의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여 그중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한다.</p> <p>제 5 조 (납부목적) 차주등이 전인로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기한 경과후 15 일이내에, 10 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불린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p> <p>제 6 조 제 1 항중 "경찰서장"을 "시장"으로, "착오납입, 이중납입"을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납입과 예지"를 "납부자예지"로 한다.</p> <p>제 7 조 제 1 항중 "납입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동항 및 동조 제 2 항중 "경찰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p> <p>[제 1 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견인료납부고지서원부 (경찰로용)

견인료납부고지서 (납부의무지용)

| | | | |
|--|---|--------------------|----------------|
| 연도 | | 고지서번호 | |
| 일반회계 | 소 | 관 | 서울특별시 (경찰국교통과) |
| 과 | 목 | 권 | 입 |
| 과 | 목 | 권 | 입 |
| 납부의무자 | 주소: | 시 구 동 가 리 번지 호 통 반 | |
| | 성명: | () | ① |
| | 주민등록번호 | | |
| 차종 | | 차량번호 | |
| 전인일시 | 년 | 월 | 일 시 · 분 |
| 전인장소 및 구간 | 시 구 동 번지 앞 도로상에서 (50m) 부터 서울특별시경찰국전인장소까지 경찰서경 | | |
| 납부금액 | 금 원 (₩) | | |
| 납부기한 | 년 | 월 | 일 까지 |
| 납부장소 | 서울특별시공금수납대행은행 | | |
| 서울특별시전인차량운행에관한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 결인 | 결 | 전인수입본인징수관 | 19 년 월 일 |
| 계 | | | 경 ① |
|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 | | | |
|---|---|--------------------|------------------|
| 연도 | | 고지서번호 | |
| 일반회계 | 소 | 관 | 서울특별시 (경찰국교통과) |
| 과 | 목 | 권 | 입 |
| 과 | 목 | 권 | 입 |
| 납부의무자 | 주소: | 시 구 동 가 리 번지 호 통 반 | |
|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차종 | | 차량번호 | |
| 전인일시 | 년 | 월 | 일 시 · 분 |
| 전인장소 및 구간 | 시 구 동 번지 앞 도로상에서 (50m) 부터 서울특별시경찰국전인장소까지 경찰서경 | | |
| 납부금액 | 금 원 (₩) | | |
| 납부기한 | 년 | 월 | 일 까지 |
| 납부장소 | 서울특별시공금수납대행은행 | | |
| 서울특별시전인차량운행에관한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19 년 월 일 |
| | | | 서울특별시전인수입본인징수관 ① |

| | | | |
|-----------------------|---|------------------------------|----------------|
| 영 수 증 (남 부 의 무 가 용) | | | |
| 연도 | | 교지서번호 | |
| 일 반 회 계 소. 관 | 서울특별시(경찰국교과과) | | |
| 과 목 | 전 인 료 | | |
| 남 부 의 무 자 | 주소: | 시 구 동 가 번 지 호 통 반 도 군 면 리 | |
|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차 종 | | 차량번호 |
| 전인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 전인장소 및 구간 | 시 구 동 번 지 암 로 상에서부터 서울특별시경찰국전인실 중관리소 까지 (km) 경찰서정 | | |
| 남부금액 | 금 원 (₩) | | |
| 남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남부장소 | 서울특별시공공금수납대행은행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19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 | | |
| 수납일부인 | | | 취급자인 |

(영수증)은 영수증의 무효입니다.

유 의 사 함

1. 전인료 납부기한 경과시는 전인집중관리소 (성동구 마장동 527-6)에 출석하여 전인료납부고지서를 재발부 받으셔야 합니다.
2. 전인료 납부일자물 임의로 정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전인집중관리소 (295-7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인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독촉을 2회이상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귀관의 재산을 채납 처분합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용 태

◎서울특별시규칙 제 2205 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재에 관한 권위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 또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기본시책
2. 문화재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가 책임하는 문화재의 평가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2 내지 제4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분과위원회) ①문화재의 분야별로 분장하여 조제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2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조제 제2조 제1항 제3호의 기념물에 관한 사항
3. 조제 제2조 제1항 제4호의 민속자료중 가옥에 관한 사항
4. 실비, 전기, 기계등 기술에 관한 사항

③제2분과위원회는 조제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재(건조물물체의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
|--|--|
| <p>④ 제 3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 2조 제 1항 제 4호의 민속자료 (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p>제 4 조의 3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별 정원 및 위원의 배수는 시장이 정한다.</p> <p>② 분과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p> <p>③ 분과위원장이 사요가 있을 때에는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 3조 및 제 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4 조의 4 (합동분과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p> <p>② 합동분과회의의 의장은 그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p> <p>③ 합동분과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 4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 <p>제 5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는 문화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타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 6조 제 1항중 "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로 하고,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간사 및 서기 각 1인"으로 하며, 동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간사는 문화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문화재 1계장이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공업진흥청차분기준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시장 김 용 배</p> <p>◎서울특별시규칙 제 2206 호</p> <p>서울특별시공업진흥청차분기준규칙중 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공업진흥청차분 기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

| | |
|---|--|
| <p>제3조중 "별표와 같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차, 3차, 4차분의 적용기한은 아래와 같다.</p> <p>1. 제2차차분: 제1차 차분후 6월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때, 2. 제3차차분: 제2차 차분후 6월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때, 제4조 제3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영업정지처분을 받은자가 이에 불응하</p> | <p>여 계속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치</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
|---|--|

| 위 반 사 항 | 처 분 기 준 | | |
|--|---------|---------|----------|
| | 1 차 | 2 차 | 3 차 |
| 1. 공연신고내용과 상위한공연을 할때 (공연법 제 17조)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2. 심사에 합격한 자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할때 (공연법 제 14조의 2)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3. 공연 또는 피용양속을 전지하 위한 다고 인정될때 (공연법 제 17조 제 1항 제 5호)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4. 성원, 관람료등의 제시의무를 위반할때 (공연법 제 21조) | | | |
| 1) 관람자의 준수사항 | 경 | 고 | 고 |
| 2)客座출발 관람자정원및 좌석배치도 | 경 | 고 | 고 |
| 3) 관람료및 기타요금을 반환할우 그 금액및 종류 | 경 | 고 | 고 |
| 4) 동시상영하는 문화공연및 유스영화의 제명 | 경 | 고 | 고 |
| 5) 공연시간표 | 경 | 고 | 고 |
| 5. 공연자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때 (공연법 제 22조) | | | |
| 1) 정액의 요금청구및 징수 | 영업정지 1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2) 정원을 초과 입장시켰을때 | 고 | 고 | 고 |
| 3) 좌석의 정원에 달렸을때 입구에 만원표출발게시 | 경 | 고 | 고 |
| 4) 장내 공연행위 단속 불이행 | 경 | 고 | 고 |
| 5) 출입구, 비상구, 복도, 계단, 통로 또는 주위의 공적에 불행의 단속 장애가 되는 물건 배치 | 경 | 고 | 고 |

| 위 반 사 항 | 처 분 가 준 | | |
|--|---------|---------|---------|
| | 1 차 | 2 차 | 3 차 |
| 6)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 적당한 포도를 가진 동화시설의 불비 | 경 고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 7) 비상구의 문호를 끈 개방할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때 | " | " 3일 | " 10일 |
| 8) 합부로 연출가 또는 연기자들 관람 석에 관람자를 악실, 무대등에 출연시권과 | " | " 1일 | " 5일 |
| 9) 연출가 또는 연기자가 공연을 해하 거나 통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연사나 행동은 하게 하였을 때 | " | " 3일 | " 10일 |
| 10) 당해공연의 용해 공하는 작본, 가요 대사본, 설명시등을 항상 비치하지 아 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제시요구에 불 응한 때 | " | " 3일 | " 10일 |
| 11) 영사실에 해강기술자이외의 자를 출 입시켰을 때 | " | " 1일 | " 5일 |
| 12) 18세미만인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 연물을 공연할때 그 금지된 자를 관 람하도록 했을때 | " | " 5일 | " 15일 |
| 13) 문화공보부장관, 허가장 또는 신고수 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 | |
| 가) 18세 미만인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할때 그 금지된 자의 관람불가 표찰불계사, 또는 상이한 내용의 표찰계사 | " | " 3일 | " 5일 |
| 나) 공연신고미필 공연물의 공연행위 또는 신고후 신고된 공연물의 불이 평할 경우 | 영업정지 2일 | " 5일 | " 10일 |
| 다) 선권불에 미성년자 관람가부를 명 기하지 않았을 때 | " | " 5일 | " 10일 |
| 라) 휴게실에서 비디오 상영행위 | | | |
| ① 불법비디오 상영행위 | 영업정지 1일 | " 10일 | " 15일 |
| ② 음란비디오 상영행위 | 허가및등록취소 | | |

| 위 반 사 항 | 처 분 기 준 | | |
|---|---------|---------|---------|
| | 1 차 | 2 차 | 3 차 |
| 마) 주종을 소동하지 않고 뉴스 및 문화영화 상영 | 경 고 | 영업정지 1일 | 영업정지 5일 |
| 바) 공연신고, 공연일자, 상영시간, 관람료등을 명기한 선전물의 게재 또는 배포행위 | 영업정지 1일 | 10 일 | 20 일 |
| 사) 당해 공연물 프로그램이외의 상설선전 및 판매행위 (구내매점의 대량취재외) | 경 고 | 1 일 | 5 일 |
| 아) 영화상영장 장내 이동판매 행위 | " | 1 일 | 5 일 |
| 자) 1일권외 공연신고 불이행 | " | 1 일 | 5 일 |
| 차) 우대권, 할인권 및 할인전단 배포 행위 | " | 1 일 | 5 일 |
| 카) 구내매점 가격표시 불이행 및 상증가격 (시중가격) 위반 판매행위 | " | 1 일 | 5 일 |
| 6. 공연에 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를 끼칠 염려가 있는 선전물이나 취위의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할때 (공연법 제 15 조) | | | |
| 1) 심의미필 또는 심의내용과 상이한 선전광고간판을 제작 게시하였을 때 | " | 3 일 | 5 일 |
| 2) 심의미필 또는 심의내용과 상이한 선전, 스티카포스터를 게시한 경우 | " | 3 일 | 5 일 |
| 3) 청소년 가지권지역에 게시가 금지된 스티카를 무단 게시한 경우 | " | 경 고 | 3 일 |
| 4) 정기간행물 또는 출판 및 발송계획을 통하여 심의미필 또는 심의내용과 상이한 선전을 하였을 경우 | " | 영업정지 3일 | 5 일 |
| 7. 공연장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공연법 제 20 조) | " | 경 고 | 3 일 |
| 8. 문화정보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영사기사로 하이금 영화를 영사하게 했을 때 (공연법 제 22 조의 2) | " | 영업정지 2일 | 7 일 |
| 9. 문화정보부 또는 퇴가청, 소속공무원의 검사,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공연법 제 11 조, 제 24 조) | " | 5 일 | 10 일 |

| 위 관 사 항 | 처 분 기 준 | | |
|--|--|---------|----------|
| | 1 차 | 2 차 | 3 차 |
| 10. 연간 상영제한일수를 초과하여 외국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영화법 제26조, 제30조) 1) 초과일수 10일미만 2) 초과일수 10일이상 20일미만 3) 초과일수 20일이상 | 초과일수당 영업정지 1일 초과일수당 영업정지 2일 처가 또는 등록취소 | | |
| 11. 문화영화 및 뉴스영화의 동시상영의 구 불이행(영화법 제 27 조) | 영업정지 1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12.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위반(공연법 제 12 조)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2) 공연장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후 3월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그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의 공연장을 준공하지 않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이상 휴장할 때 4)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조건에 위반할 때 | 허가취소 " " " 허가취소 또는 3개월이하 영업정지 | | |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 | |
| 1987.12.31. | | | |
| 서울특별시 김 용 태 (인) | | | |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 제 2207 호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운영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

제2조 제2항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만,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100인"을 "50인"으로, "20인이상 50인"을 "6인이상 10인"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당연적 위원
회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시민국장, 경찰서 정보과장,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공장저마음운동 지부장

- 2. 위촉위원
대상지역에 위치한 근로청소년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 종교계 인사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제10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2항중 "연리2할5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본문중 "천 이하를 월상한다"를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지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1일당 월입대로는 초당 월입대료를 초당 입주정원으로 나누는 요금
- (별지 제6호서식)중 (제산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산의 표시)

소재지 :
건 물 :

[별지 제6호서식]중 제1조 제2항중 "면리25%"를 "면리%"로 하고, 제3조 제1항 작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월입대로는 초당 월입대료를 초당 입주정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2. 1월미단 거주자가 발생시 1월미단 거주자는 거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 용 태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208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기타 중별 조정: 전월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양수기 미설치 수원은 별표2, 양수기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별표3에,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며 1㎥미만은 버린다.

별표 3 업무별 1일 근무시간표중 여관단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 삽입한다.

| | | | | | | |
|---|---|---|---|---|---|---|
| 업 | 대 | 별 | 근 | 수 | 시 | 간 |
| 공 | 사 | 장 | | | | 6 |

제 14 조 제 2 항중 “다음표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다음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 경 | 별 | 시 | 험 | 종 | 류 | 사 | 용 | 공 | 차 | 법 | 위 |
|----|---|-----|---|---|---|---|-----|---|---|------|---|---|
| 13 | % | | 소 | 류 | 시 | 험 | 100 | 분 | 의 | 6 | | |
| 13 | % | | 대 | 류 | 시 | 험 | 100 | 분 | 의 | 3 | | |
| 20 | - | 50 | 소 | 류 | 사 | 험 | 100 | 분 | 의 | 6 | | |
| 20 | - | 50 | 대 | 류 | 시 | 험 | 100 | 분 | 의 | 3 | | |
| 75 | - | 350 | 소 | 류 | 시 | 험 | 100 | 분 | 의 | 6 | | |
| 75 | - | 350 | 대 | 류 | 시 | 험 | 100 | 분 | 의 | 3.75 | | |

제 19 조중 근무종별 순위표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 4 종
2. 제 1 종
3. 제 8 종
4. 제 2 종
5. 제 6 종
6. 제 5 종
7. 제 3 종
8. 제 7 종

제 25 조 제 1 호중 “공무원 9급 6호봉”을 “공무원 9급 5호봉”으로 한다.

부 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약국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규칙제 220호

서울특별시약국및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약국개설자 및 약품등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 67조, 제 69조 및 마약법 제 5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 및 약품등 판매업자에 대한 각시법령 및 마약법령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동류 및 허가취소처분요건) 약국개설자 또는 약품등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동류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부여하지 않거나 약국을 개설하게 하거나 법 제 35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허가증을 부여하여 약품등 판매업을 영위하게 한 때.
2. 법 제 16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35조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영업장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그 영업장소를 알 수 없을 때.
3. 법 제 55조 각항에 위반하여 판매품이 금지된 의약품 등 (이하 "판매금지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전양한 때 (당해제품의 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약국 또는 의약품등판매업소의 영업장소 면적이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출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이하 "기준령"이라 한다)의 기준에 미달하거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수명령을 이행한후 1년이내 동일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
5. 1년이내에 3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6. 1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후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

제 3조 (업무정지처분요건) ①약국개설자 또는 약품등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제 위반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판매업자 자신이 일차적으로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 19조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판매업자가 당해 약국의 분과업무의 업

두에 중사한 때.

3. 판매금지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때 (당해 제품의 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4.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

②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5일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의 종업원등 약사가 아닌 자가 조제행위를 한 때.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 또는 집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때.

3. 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때.

4. 판매금지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때 (당해 제품가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5. 7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이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7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

③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7일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한 때.

2.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관리약사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아니한 때 (일상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개설자외의 의약품등 판매업자가 조제행위를 한 때.

4.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등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때.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개설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국제제를 제조한 때.

6. 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할 때.

7. 법 제 36조 제 2항의 규정상 위반하여 기상한외사에 수탁된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을 혼합 판매할 때.

8. 법 제 38조 및 약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27조 제 1항,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상이 소매업자를 하거나 소매상이 도매업자를 하거나 도매상이 행상인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하는 등 판매질서를 위반할 때.

9. 법 제 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종상이 의약품용 계통한외 판매할 때.

10. 법 제 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약상이 의약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때.

11. 법 제 64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사감시를 기피 또는 거부한 때.

12. 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후 1년 이내의 동일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

13. 기준령을 위반하여 계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영업소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제외한다)

14. 기타 위 자조에 준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

④약국개설자 및 의약품등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집할 수 있다.

1. 법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외의 장소에서 조제행위를 할 때.

2. 법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성명, 용법, 용량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 47조 제 4항의 규정상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무약 또는 국약을 판매하거나 국외의 무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때.

4. 법 제 6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기명령을 받은 의약품등을 계속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때.

5. 시행규칙 제 48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광고 행위를 한 때.

- 6. 시행규칙 제 48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약품용 상 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행위를 한 때.
 - 7. 시행규칙 제 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약국 또는 당해 업 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 지 아니한 때.
 - 8. 경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 반사실이 있을 때.
 - 9. 마약법 제 53조 제 2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한의마약을 취 급한 자가 마약법을 위반한 때.
 - 10.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 반사실이 있을 때.
- 제 4조 (개수명령 요건) 약국개설 자 또는 의약품등 판매업자의 시설이 기준령을 위반하여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때 지장이 있을 때에는 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 제 5조 (경고처분 요건) 약국개설 자 또는 의약품등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 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 1. 법 제 16조 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20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2. 법 제 22조의 규정에 위반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행 위를 거부한 때.
 - 3. 법 제 25조의 규정에 위반 하여 처방전을 2년동안 보존 하지 아니한 때.
 - 4. 법 제 38조 및 시행규칙 제 27조 제 3항 제 3호의 규정 에 위반하여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품등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한 때.
 - 5. 법 제 38조 및 시행규칙 제 27조 제 10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의약품용 배합하는 자료 함의급 그가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 약품의 '문반응기 등에 이를 식' 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 하지 아니한 때.

6. 법제 35조 및 시행규칙제 27조제 1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7. 법제 38조 및 시행규칙제 27조제 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내장, 약봉지, 간판 또는 강문에 광고표시를 한 때.

8. 법제 47조 제 1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독약 또는 극약을 판매한 경우 그 품명, 수량, 사용목적, 판매년월일, 양수인의주소, 직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문서를 수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이 부실한 문서를 수명한 때 또는 그 문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9. 주의처분을 받은 후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사실이 있을때.

10.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

제 6조 (주의처분 요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등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제 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독약 또는 극약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시진하지 아니하고 저장 또는 진열한 때.

2. 시행규칙제 7조 제 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약품용 의약품이 아닌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저장 또는 진열한 때.

3. 시행규칙제 7조 제 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시 약국을 청결하게 하지 아니한 때.

4. 시행규칙제 7조 제 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사가 대외의행복을 활용하지 아니하거나 경질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

제 7조 (처분기준의 감정) 처분권자는 국민보건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8조 (약사면허행정처분의회) 위반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법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법제 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사면허를 대여한 때.

2. 법제 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제가 금지된 의약품등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판매 액수가 50만원 이상인 때.

3. 법제 64 조의 규정액 위반하여 약사감시를 기피 또는 거부한 때,
 제 9 조 (통보 및 가재) ① 관할 보건소장은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액 위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 및 자구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분이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일 경우에는 각 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보건소장은 등록 또는 허가 대장과 별지서식에 의한 부정약업자 처리부에 처분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부정약업자 처리동보를 받은 자구보건소장은 부정약업자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처분사항이행) 업무정리중일 약국개설자가 행한 휴업·폐업의 신고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자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서식)

부 정 약 업 자 처 리 부

| 등록 번호 | 면허 번호 | 명 칭 | 성 명 | 소재지 | 위반 법규 | 처리 | 처분 일자 |
|----------|----------|-----|-----|-----|----------|----|----------|
| | | | | | | |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 서울특별시규칙제 2210 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0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제 118 조 제 1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사무는 각 회계별 주무과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 124 조 제 5 호, 제 126 조의 2 제 1 항 제 7 호

제 127 조 제 4 호, 제 129 조 제 3 호 및 제 132 조

제 2 호 중 "가옥대장"을 각각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한다.

제 135 조 제 1 항 제 7 호 중 "토지, 가옥대장"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한다.

제 186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은 해당 사무 종료 후 5 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 정산서를 제출한에게 제출하고 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 42 호의 1 서식), (제 42 호의 2 의 1 서식), (제 42 호의 3 의 1 서식), (제 42 호의 4 의 1 서식), (제 42 호 의 5 의 1 서식) 및 (제 42 호의 6 의 1 서식) 중 지출원란 다음의 회계과 장단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신설구업무처리에 관한 관정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제 650 호

서울특별시신설구업무처리에관한관정규정 개정

신설구 업무처리에 관한 관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 12367 호에 의하여 1988 년 1 월 1 일부터 개정되는 신설구 업무처리

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처리) ①신설구 (신설 보 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처리는 신설구 기구의 해당 직위에 대한 새로운 보직발령이 있을 때까지 신설구 관할구역이 속하였던 종전구 (이하 종전구라 한다) 기구의 같은 직위 보직공무원이 각각 겸임하여 처리한다.

②신설구의 행정사무중에 종전구에 없던 사무의 처리기준은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가정의례식장등 허가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 서울특별시훈령제 651 호

서울특별시가정의례식장등허가처리규정

서울특별시 가정의례식장등 허가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가정의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의 규정 에 의하여 결혼예식장영업, 결혼상담소영업, 장례식장영업 및 장의사영업 (이하 "의례식장등"이라한다)의 허가에 다른 세부시설 기준등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과 통일을 기하고 의례식장등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제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의례식장등에 관하여 건축법규, 주차장 법규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조건부허가) ①의례식장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허가 부서는 동 영업 허가부서의 영업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조희를 받아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의례식장등의 영업허가 부서는 건축물 완공후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다른 제관조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영업허가를 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건축허가와 동시에 통보한다.

③조건부 영업허가를 통보받은 자로부터 조건부 이행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허가부서는 조건부 이행확인증 영업허가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영업을 허가한다.

④조건부 영업허가는 건축허가후 2달이내 또는 준공검사후 6개월 이내에 법령에 규정된 시설과 영업에 필요한 시설등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4조 (운영상황보고) 구청장은 의례식장등의 매분기 운영상황을 "질지 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지도 및 감독등) 구청장은 의례식장등의 영업허가를 받은자의 운영상황을 매분기 1회이상 지도 감독한다.

제 6조 (장부등의 비치) 의례식장등에서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2. 주민관청에서 지시한 서류 및 지시사항
3. 주민관청 및 관계 기관과의 왕복서류 및 각종 보고서

제 2장 결혼예식장영업

제 7조 (허가제한) ①교통체중이 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결혼예식장의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1. 광화문을 기점으로 하여 도심 5킬로미터권내 (이하 "도심권내"라 한다) 전지역 (별첨 도면 참조)
2. 30미터 이상의 2 도로가 접

하는 간선 코차집 지역인 경우에 최근접 가가으로부터 60미터 이내의 도로변

다만, 거리는 최근접 도로 경계선에서 예식장 건물 외벽까지로 하며, 담장 등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 울타리 벽까지로 한다.

3. 기존예식장이 있는 동일 건물내 ①결혼예식장 소재지변경 및 복식원이 증가하는 변경허가는 신규허가로 본다.

②예식장 시설에 따라 야기되는 교통문제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의하여 철거되는 간선도로변 예식장의 경우에 제 1항 제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조 (시설기준) ①예식실수 : 도심 5

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이내 지역에는 4실이내로 10킬로미터 외곽지역은 6실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대문내에 소재한 예식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래 보유중인 예식실수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대기실 : 신랑대기실과 신부대기실은 각각 3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라객 대기실은 예식실 총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식실이 층별로 있을 때에는 층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단폭:예식장전몰의 계단폭은 2미터 이상으로 2개소이상 설치 하되 자차 건물외부 출입문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레 페이타, 에스카레이타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출입문:예식실마다 복도에 면한 측에 폭 90센티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복도:예식실이 복도의 양측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좌석수:예식실의 좌석은 3.3제곱미터당 3석 이하를 설치하여야 하며, 횡렬좌석의 양끝에는 50센티미터 이상의 종렬 통로물, 가운데에는 1미터 이상의 종렬 통로물 설치하여야 한다.

⑦확장실:확장실은 예식실의 좌석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남·여별 확장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⑧주차시설
1. 예식장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당 '차량'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전용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부를 옥외 주차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에 설치한 기계식 이체 주차시설은 그 바닥 부분만을 옥외 주차시설로 본다.

2. 연면적 산정은 다음 자호의 1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관계 규정 에 의한다.
가. 건물내 주차 시설이 있을 때에는 주차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나. 복합용도 건물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예식장 사용(부대건물 사용포함) 연면적

제 3 장 결혼상당소영업

제 9 조 (허가제한) 도심권내 지역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제 10 조 (시설기준) 영업장소와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영업소내에 상담실과 남·여 상면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결혼상담요원등) 결혼상담소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와 결혼 상담요원은 다음 자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이어야 하며, 결혼상담소에는 1인이상의 결혼상담요원을 두어야 한다.

1.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을 전공한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등에서 5년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자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p>4.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자로서 사회복지 및 종교단체나 기관에서 상담과 관련있는 분야에 5년이상 유사경력이 있는 40 세 이상인자</p> <p>제 13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원이 될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5세 미만인자 2. 파산 선고를 받은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자 3. 한정치산자 및 금지산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5. 결혼상담소의 허가취소 또는 무단 휴·폐업 당시의 경영자 또는 상담원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소개영업, 직업소개영업, 유종직업소경영, 신용조사업을 겸업하고 있는자 7. 제 11 조 제 2 호와 제 4 호 해당자 중 고용직종등 단순 노동분야 근무경력자 | <p>하여 설치하고 제반 위생시설 및 영업에 필요한 의약품을 넣을 수 있는 의약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조제대기실:빈소별로 조제 대기장소들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장례 예식실의 경우에는 조제 대기실을 예식실 총 면적의 30 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식실의 층별로 있을 때에는 층별로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14 조 (준용규정) 제 8 소 결혼예식장 영업허가에 관한 시설기준중 제 3 항 내지 제 8 항의 규정을 장례식장 영업허가시에도 준용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제 4 장 장례식장영업</p> <p>제 13 조 (시설기준) ①영안실:시체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염습실:염습하는 자를 1인이상 두어야 하며, 염습 참관실과 구분</p> | <p>제 5 장 장 의 사업 업</p> <p>제 15 조 (허가제한) 도심권내 지역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한다.</p> <p>제 16 조 (시설기준) 영업장소의 권적을 16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장의활동 및 기구의 보관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지 제 1 호서식)</p> <p>가정의례업소운영상황보고 (/ 분기)</p> <p>1. 결혼예식장 운영 상황</p> | <p>부 칙</p> <p>①(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준전의 지침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종도 특정한 의례식장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준전의 관계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업소명</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상 황</th> <th colspan="3">구 분</th> </tr> <tr> <th>50석 이하</th> <th>100석 이하</th> <th>150석 이하</th> <th>200석 이하</th> <th>200석 이상</th> <th>일자</th> <th>처분내역</th> <th>취반내역</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업소명 | 구분 | 상 황 | | | | | 구 분 | | | 50석 이하 | 100석 이하 | 150석 이하 | 200석 이하 | 200석 이상 | 일자 | 처분내역 | 취반내역 | 계 | | | | | | | | | | |
| 업소명 | | | 구분 | 상 황 | | | | |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50석 이하 | 100석 이하 | | 150석 이하 | 200석 이하 | 200석 이상 | 일자 | 처분내역 | 취반내역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시

㉞ 서울특별시고시제 955 호

1988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고시

1987.12.31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8년도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지방
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한다.

| 연 번 | 회 계 별 | 계 산 액 |
|-----|--------------------|---------------|
| 1 | 일반회계 : | 1,149,906 백만원 |
| 2 | 특별회계 : | 1,085,727 " |
| |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 79,500 " |
| |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 | 30,631 " |
| | 유료도로비 특별회계 | 15,225 " |
| | 특정건축물경리비 특별회계 | 947 " |
| | 복동·신정동개발사업비 특별회계 | 244,964 " |
| | 도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 97,959 " |
| | 올림픽사업비 특별회계 | 154,484 " |
| |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 235,708 " |
| |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 72,215 " |
| | 병원사업 특별회계 | 4,080 " |
|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13,631 " |
| |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 92,600 " |
| |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 35,178 " |
| | 사용료, 수수료 통합경수 특별회계 | 5,732 " |
| | 새마을소독특별지권 사업비특별회계 | 3,723 " |
| 3 | 기금운용계획 | |
| | 도시재개발사업기금 | 30,567 " |
| | 재건축부담금 | 7,317 " |

㉔ 서울특별시고시제 96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5 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12.31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용산구 용산동 6 가 69-167 신동아건설(주) 대표 유상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 가. 위치 : 도봉구 방학동 272 의 45 필지
 - 나. 대지면적 : 110,453.08 ㎡ (중 : 20,705.16 ㎡)
 - 다. 규모 : 아파트 10-15 층 26 칸 2,825 세대, 상가 2 동, 열교 환선 5 개소, 주차장 (지하) 4 개소 공중변소 8 동 및 부대부속시설 (중, 아파트 5 동 384 세대 상가 1 동)
4. 사업시행기간 : 1985.11.27-1989.5.31
5.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




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기정 | 학교 | 도봉구 방학동 455-5 의 11 필지 | 13,710 ㎡ | |
| 변경 | " | 도봉구 방학동 455-5 의 7 필지 | 11,023 ㎡ | 일부제지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신설 | 공공의청사 | 도봉구 방학동 490 의 4 필지 | 337.66 ㎡ | 등사무소 바출소 |

다. 판제도서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및 도봉구 도시정비과의 비제도서와 같음.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공 고</p> <p>◎ 서울특별시공고제 811 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신 조</p> <p>양천구 보건소장의 관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조하였기 동규칙 제6조에 의하여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7. 12. 31 서울특별시장</p> <p>1. 사용일자 : 1988. 1. 1 2. 신조직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직인 및 양천구보건소 직인</p> | <p style="text-align: center;">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영</p>  |  |
| <p style="text-align: center;">직 인 등 록 조 서</p> <p>회 계 명 : 일반회계</p> <p>관 서 명 : 양천구보건소</p> <p>직 명 : 양천구보건소 분임품품 출납원</p> <p>사용계시일 : 1988. 1. 1</p> | <p style="text-align: center;">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영</p>  | <p>공인명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장 직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직인</p> <p>◎ 서울특별시공고제 811 호</p> <p>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업무행위인등록</p> <p>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소관 회계 관리 공무원직인을 서울특별시 회계 관리 공무원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조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에 의거 이에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7. 12. 31 서울특별시장</p>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양천구보건소 직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 문물관리관 사용개시일 : 1988.1.1</p> | <p style="text-align: center;">인 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양천구보건소 직 명 : 양천구보건소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사용개시일 : 1988.1.1</p> | <p style="text-align: center;">인 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 보건사회부소관 일반회계 관 서 명 : 양천구보건소 직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 분임지출관 사용개시일 : 1988.1.1</p> | <p style="text-align: center;">인 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양천구보건소 직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 분임지출원 사용개시일 : 1988.1.1</p> | <p style="text-align: center;">인 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 <u>직 인 통 록 조 서</u> | | 인 영 |
|--|---|-----|
|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양천구보건소 직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 본입경리관 사용개시일 : 1988.1.1 |  | |
| 회 계 명 : 특별회계 관 서 명 : 양천구보건소 직 명 : 양천구보건소 의료보호 기금출납원 사용개시일 : 1988.1.1 |  | |
|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양천구보건소 직 명 : 양천구보건소 진도자금 출납원 사용개시일 : 1988.1.1 |  | |
|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양천구보건소 직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 징수관 사용개시일 : 1988.1.1 |  | |

| | | | | | | |
|---|---|--|---|---|--|---|
| <p>◎서울특별시공고제 813 호</p> <p>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p> <p>전기공사업 제 31 조 제 1 호 규정애</p> <p>가. 면허취소 내역</p> | | <p>의외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면허를 취소하였기 특별 제 42 조 규정애 의 하여 이를 공고한다.</p> <p>1987.12.31</p> <p>서울특별시 장</p> | | | | |
| 면허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취소일자 | 사 | 유 |
| 제 2 종 제 1124 호 | (주)제원전기 | 서동열 | 동대문구 용두동 103-43 | 87.12.26 | 전기공사업 제 7 조 위반-특별 제 31 조 1 호 조치 (면허취소) | |
| <p>구 공 고</p> <p>◎성북구공고제 289 호</p> <p>직 인 개 각</p> <p>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 및 제 4 조 규정애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 장직인 (민원사무 전용포함) 과 제인을 개각하고 구직인을 폐기하였기, 동 규</p> | | | | <p>칙 제 6 조 규정애 의거 이를 공고 한다.</p> <p>1987.12.31</p> <p>성 북 구 장</p> <p>1) 조각사용 개시일: 1988.1.1. 09:00 2) 구직인 폐기년월일: 1987.12.31 3) 개각 및 폐기동: 월곡 제 1 동의 3 개동 4) 직인 인영</p> | | |
| 인 |  |  |  | | | |
| 영 | | | | | | |
| 공인명 | 월곡제 1 동장직인 | 월곡제 1 동장인 (민원사무 전용) | 월곡제 1 동제인 | | | |

| | | | |
|---|----------|--|----------|
| 인 영 | | | |
| 공인명 | 철곡제 2동장인 | 철곡제 2동장인 (민원사무관용) | 철곡제 2동지인 |
| 인 영 | | | |
| 공인명 | 철곡제 3동장인 | 철곡제 3동장인 (민원사무관용) | 철곡제 3동지인 |
| 인 영 | | | |
| 공인명 | 철곡제 4동장인 | 철곡제 4동장 (민원사무관용) | 철곡제 4동지인 |
| <p>◎양천구공고제 1 호</p> <p>관 인 신 조</p> <p>서울특별시 관일규칙 제 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천구 산하 동사 무소 제인을 신조하였기 동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 | <p>1. 사용개시일 : 1988.1.1. 00:00 2. 관인명 : 목제 1,2,3,4동, 국1동분소용 선일제 1, 2, 3, 4, 5, 6 동 선정제 1, 2, 3, 4, 5 동 이상 16개동 제인 16개</p> <p>1987.12.3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p> | |

| | | | | |
|--------|---|---|---|---|
| 인 영 |  |  |  |  |
| 공인명 | 목 제 1 동 | 목 제 2 동 | 목 제 3 동 | 목 제 4 동 |
| 인 영 |  |  |  |  |
| 공인명 | 신월 제 1 동 | 신월 제 2 동 | 신월 제 3 동 | 신월 제 4 동 |
| 인 영 |  |  |  |  |
| 공인명 | 신월 제 5 동 | 신월 제 6 동 | 신정 제 1 동 | 신정 제 2 동 |

| | | | | |
|---|---|---|---|---|
| 인 영 |  |  |  |  |
| | 공인명 | 신정계 3 동 | 신정계 4 동 | 신정계 5 동 |
| 사 령 | | | | |
| ◎ 1987 년 12 월 29 일 령 제 341 호 | | | | |
| 성 명 | 발 령 사 함 | | 현 부 서 | 직 급 |
| 김진국 | 관악구 도시경비국장 지방시기관 | | 관악구 도시경비국장 | 지방행정사무원 |
| 정태승 | 도봉구 " " | | 도봉구 " " | " " |
| 곽정우 | 용산구 " " | | 용산구 " " | " " |
| 박용태 | 내무국 (시장비서관) | | 내무국 비서관 | " " |
| | | | 직무대리 | |
| ◎ 1988 년 1 월 1 일 령 제 340 호 | | | | |
| 성 명 | 발 령 사 함 | | 현 부 서 | 직 급 |
| 장덕기 | 동작구구청장 직무대리 | | 내 무 국 | 지방부이사관 |
| 길의재 | 중랑구 준비요원 (구청장) | | 동 작 구 청 장 | 부 이 사 관 |
| 허재구 | 노원구 " (") | | 세종문화회관장 | 지방부이사관 |
| 조남호 | 서초구 " (") | | 보건사회국장 | 부 이 사 관 |
| 김성순 | 송파구 " (") | | 공 보 관 | 지방부이사관 |
| 최선길 | 중랑구 " " | | 내 무 국 | " " |
| 김동일 | 노원구 " " | | " " | " " |
| 김동훈 | 송파구 " " | | " " | " " |
| 김승철 | 서초구 " " | | " " | " " |
| 김찬운 | 강남구부청장 | | " "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 김문중 서정희 유철수 | 새중문화회관장 공보관 양천구 준비요원 | 강남구부청장 공무원교육원 표수부장 내무국행정과장 | 지방부이사관 " 시 기 관 |
| ◎ 1987년 12월 30일 령 제 347 호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장인식 | 내무국 | 기술상사관(후직중) | 지방별정직3급상당 |
| ◎ 1987년 12월 29일 령 제 346 호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정규원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외규 정액 외 하역 그 직을 면함. | 영등포병원 | 지방의사 |
| ◎ 1987년 12월 31일 령 제 347 호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윤귀성 | 도시계획과 파견 (88.1.1-6.30) (빌라노 국제전시회 준비) | 용산구 | 지방행정주사 |
| 박명서 | " | 도봉구 | 지방행정주사보 |
| 정철호 | 운수1과 파견 (88.1.1-3.31) (개인택시 면허심사반) | " | " |
| 유종선 | " | 마포구 | 지방행정서기 |
| 명대훈 | " | 구로구 | " |
| 노명현 | " | 동작구 | " |
| 조필세 | " | 서대문구 | 지방행정서기보 |
| 김준기 | 업무과 파견 (88.1.1-6.30) (부정급수 조사반) | 급수과 | 지방행정주사보 |
| 이세찬 | " | 종로구 | 지방행정서기 |
| 강용모 | " |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 김국만 | 업무과 파견 (88.1.1 - 6.30) (부정급수 조사반) | 중 구 | 지방행정서기 |
| 이재식 | " | " | " |
| 최원구 | " | 용 산 구 | 지방행정주사 |
| 조광삼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주사보 |
| 김학순 | " | " | 지방행정서기 |
| 박거범 | 업무과 파견 (88.1.1 - 6.30) | 성 북 구 | " |
| 이체형 | " | " | " |
| 윤인수 | " | 도 농 구 | " |
| 조종계 | " | " | " |
| 정경실 | " | 은 경 구 | 지방행정주사보 |
| 이성태 | " | " | 지방행정서기보 |
| 조광진 | " | 서 태 문 구 | 지방행정주사보 |
| 유성배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 |
| 임길배 | " | 마 포 구 | " |
| 김성수 | " | 강 서 구 | " |
| 강승모 | " | " | " |
| 박종원 | " | 구 로 구 | " |
| 김기현 | " | " | 지방행정서기보 |
| 이수철 | " | 관 약 구 | 지방행정주사보 |
| 박태건 | " | " | 지방행정주사 |
| 김영주 | " | 강 남 구 | 지방행정서기보 |
| 정희진 | " | 강 동 구 | 지방행정서기 |
| 김철수 | " | 묵도수원지 | " |
| 김희수 | 전자계산소 파견 (88.1.1 - 6.30) | 농 속 과 | 지방행정주사보 |
| 고부석 | " | 마 포 구 | " |
| 류광열 | " | 동 작 구 | 지방행정서기 |

| 성명 | | 발령사항 | | 원부서 | 직급 | | |
|---|---|--------------|-------------------|-------------|---|-----------------------------|----|
| ◎ 1987년 12월 31일 항 제 348호 | | | | | | | |
| 유인선 | 지방공무원법 제 29조 제 1항 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 | 지법공무원 | 제 1항 제 1, 2호 | 시립운동장 | 지방행정주사보 | | |
| ◎ 1988년 1월 1일 경 제 349호 | | | | | | | |
| 고광명 |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내무부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 경제기획원 | | | 행정주사 | | |
| 박영근 | | 전남교육위원회의 | | | " | | |
| 이양희 |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 | | " | | |
| 문종력 | 경제기획원 진출을 명함. | 은명구 (새마을과) | | 지방행정주사 | | | |
| 최기석 | 문교부 진출을 명함. | 영등포구 (도립 1동) | | | " | | |
| 김진영 | " | 도봉구 (삼계 1동) | | | " | | |
| ○ 단기 해외출연 파견명령사항 | | | | | | | |
| 소속 | 직급 | 성명 | 출연기관 | 출연분야 | 파견기간 (출연기간) | 출연비용 | 비고 |
| 은명구 수도관리과 | 지방행정 주사보 | 김혜경 (32세) | 별지용 출판사 문화원 | 도시계획 출판사 | 88. 1. 9 - 4. 12 (88. 1. 11 - 4. 10) | 책대비: 별첨용 점 부 항공료: 사 비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